

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

복지용구

코리아메디칼

< 이용료 및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>

1. 기관의 기본 의무

- 1) 복지용구의 제공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.
- 2) 계약 체결시 기관의 일반정보, 계약내용, 수급자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.
- 3)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여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, 급여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여야 한다.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복지용구에 대한 사용설명은 수급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수급자이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.
- 2)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,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
3) 복지용구 계약의 목적

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족 및 급여제공자의 육체적,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.

②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, 낙상 및 욕창 등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.

4) 복지용구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여백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5)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기관의 의무

가.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, 본인에게도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
나.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,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.

다.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.

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신원인수인(수급자 또는 보호자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(1)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/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(2)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수급자 또는 보호자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(1) 수급자 건강, 질병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(2)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
- (3)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, 요양원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- (4)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
- (5)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복지용구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6)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

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이다.

②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 + 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
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.

연 한도액	구분	공단부담금	본인부담금	내역
160만원	일반수급자	85%	15%	100% 중 85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%는 본인이 부담
	경감수급자	91%	9%	100% 중 91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%는 본인이 부담
	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	94%	6%	100% 중 94%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%는 본인이 부담
	기초수급자	100%	0%	100%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.

7) 계약의 해제

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가.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나.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다.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

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,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.

3.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

1)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가격을 기준으로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, 고시변경으로 인해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가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.

2) 기관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3) 본인부담금의 징수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은행계좌에 온라인 송금 등 기타의 방법으로 기관에 납부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수납을 한다

4)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을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